####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
  - 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6. 9. 26〉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광명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서 법 제52조에 의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. 〈개정 2016. 9. 26〉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17. 3. 12〉
  - 1. 법학,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
  - 2. 변호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
  - 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
  - 4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의 인·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 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

####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공임대주택 사업의 인·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

- 5.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
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〈개정 2017. 3. 12〉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3. 12〉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.
  - 1.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
  - 2.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
  - 3.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
  - 4. 관리비
  - 5.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·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· 보수
  - 6.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, 다만,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  - 7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, 주택관리,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7. 3. 12]
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17, 3, 12, 2018, 7, 31〉
  -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

-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,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
  - ② 간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가 된다.
  -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- 제8조(분쟁의 조정 신청 등)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분쟁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조사 및 의견 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하거나,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조정의 효력)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

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수락의사를 양 당사자로부터 모두 통보받으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때 당사자간에서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삭제〈2017. 3. 12〉

- 제12조(비용부담)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·진단·시험 또는 관계전문가·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.
  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간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, 8, 9〉
- 제14조(비밀의 준수)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 - 1. 회의일시 및 장소
  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  - 3.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
  - 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  - 5. 의결사항

6. 기타 중요사항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46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"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"를 "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48 부터 71) 까지 생략

부칙〈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. 3. 12 조례 제2243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# [별지 제1호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										
2] =] A]	성	명			주민등	록번호	2			
신 청 인	주	소						(	전화)	
대 리 인	성	명			주민등	록번호	2			
내 더 인	주	소					·	(	전화)	
피신청인	성	명			주민등	록번호	2			
퍼선경인	주	소						(	전화)	
	공동	주택명			세 대	H 2	r			
분쟁대상	주 건	년 축 물			층		동/구.	조		
공동주택	부 대	시 설								
현 황	복리	시 설								
	관리	방 법			난 방	방	4			
신청내용										
신청취지 및 사유										
분쟁발생 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성과										
			백분쟁조정 임대주택				_		세1항의	규정
								년	월	일
						신청약	인			(인)
광명시 '	임대주	택분쟁	조정위원회	기 위원정	귀하					

# [별지 제2호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임대주택 분쟁조정안								
사 건 명								
신청일자								
دا جا دا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-			
신 청 인	주 소					(2	전화)	
대 리 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		
내 더 인	주 소					(2	전화)	
리 기키이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-			
피 신청인	주 소					(2	전화)	
신청내용								
임대주택 분 쟁 조 정 안								
「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						년	월	일
광명시 임	대주택	분쟁조정위	위원회 위	원장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							
사 건 명							
사신 정							
신청일자							
시청이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신 청 인	주 소			(전화)			
리 귀 이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대 리 인	주 소			(전화)			
교지점이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피신청인	주 소			(전화)			
출 석	성 명	주소 또는 소속	자 격				
대 상 자			참고인 또는				
출석요구일자							
출 석	장 소						

「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광명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

\*\*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, 주민등록증,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.

# [별지 제4호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임대주택 분쟁조정서							
사 건 명							
신청일자							
신 청 인	성 명	주민등록	번호				
선 경 친	주 소				(전호	화)	
대 리 인	성 명	주민등록'	번호				
네 니 긴	주 소				(전호	화)	
피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	번호				
퍼신경인	주 소				(전호	화)	
신청내용							
임대주택 분 쟁 조정내용							
정에 의견	하여 이	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사건 임대주택분쟁에 대하여 을 확인합니다.					
					년	월	일
				신 청 인 피신청인			(인) (인)
광명시 약	임대주택	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					

[별지 제5호 서식] 〈개정 2008. 6. 16〉

		임대주택 분쟁조정	! 거부 및 종	결통되	<b>보</b> 서		
사 건 명							
신청일자							
ام اجا دا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신 청 인	주 소				(전회	-)	
대 리 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네 너 긴	주 소				(전회	-)	
피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<u> </u>	주 소				(전회	-)	
신청내용							
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사유							
「광 정에 의 <sup>·</sup>	명시 일하여 위	]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 사유로 본 사건의 분	구성 및 운영 쟁조정을 거부	조례」 · 종결학	제11조 합니다.	제4항의	计
					년	월	인
광명시	임대주	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	장				